# 양산 사송지구 B-8BL 사송 롯데캐슬
# 임차인 모집공고(공공지원민간임대)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공급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사송리 1218번지 (양산 사송지구 B-8BL)

▌공급대상 : 60~85㎡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903세대 중 잔여세대 120세대

▌시행사:(주)엘티대한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시공사 : 롯데건설(주)

※ 본 주택의 임차인 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산 사송지구 B-8BL 사송 롯데캐슬은 홍보관 관람을 사이버모델하우스(https://www.elyes.co.kr/main/main.do)와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모델하우스와 병행 오픈에 따른 상담전화(055-372-4999)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문의집중 등으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 임차인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임대주택은 사용승인 이후 분양하는 후분양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로 입주지정기간은 2025.01.17.(금) ~ 2025.03.18.(화)이며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납부 시 입주가 가능하므로, 청약전 반드시 본인의 대출가능여부, 대출한도, 자금계획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알선 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본 주택의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2024.12.27.(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의 나이, 국적, 무주택자격요건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본 주택은 (주)엘티대한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사업주체” 또는 “임대인” 또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니며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의 임차인 모집방식을 준용합니다.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표준임대차계약서)를 준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의 최하층 우선 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또는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1항에 의거하여 퇴거요인(기존 주거주택 포함)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주택의 사업주체는 (주)엘티대한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며, 계약자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위탁 받아 수행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차인 모집공고일[2024.12.27.(금)] 현재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 중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가. 일반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공급 당첨자 중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 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와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무주택자"란, 청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본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계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일반공급 당첨자 중 금회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예비임차인 계약기간 포함) 내 계약한 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일 이후 필요 시 임차인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임대기간 중에도 확인할 수 있음),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후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 7 제1항의 규정 [임차인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중 빠른날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 3에 따른 임차인자격(무주택세대요건) 및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을 적용합니다.

▌본 주택의 홍보관 개관은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하며, 공급안내문 등은 사송 롯데캐슬 홈페이지(https://www.elyes.co.kr/mai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주택의 일반공급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본 주택은 실임차인을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임차인이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주택법」,「건축법」,「공동주택관리법」, 및「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임차인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후를 불문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보증금 중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위약벌이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해지로 인한 불이익(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 위약금징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이 주택은 타입과 관계없이 세대당 1건만 청약신청이 가능,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여 중복당첨 시 당첨을 취소합니다.

▌본 주택은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의 중복입주에 따른 퇴거요건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 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및 제14조의 7에 따른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나.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8.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
3.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임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 의무 발생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11)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7에 따라 주택소유 기준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기타 관계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2021.06.01.)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 구분 | 청약신청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검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5.01.02.(목) | 2025.01.07.(화) 16:00 이후 | 2025.01.09.(목) ~2025.01.10.(금) | 2025.01.14.(화) ~2025.01.15.(수) |
| 방법 | 인터넷청약 (09:00~17:30) | 개별조회<br>(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방문접수 (10:00 ~ 16:00) | 방문계약 (10:00 ~ 16:00) |
|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PC : www.applyhome.co.kr<br>스마트폰 : 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PC : www.applyhome.co.kr<br>스마트폰 : 앱 | 홍보관<br>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1218(단지내 상가 108호) | |

## Ⅰ 주택공급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청 **공동주택과 - 47641호(2024.12.26.)**로 임차인모집공고 신고 수리

▌공급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1218번지 (양산사송지구 B-8BL)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7층, 지상 1~19층 11개동, 총 903세대 중 금회 공급세대 120세대(일반공급)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대상

| 주택관리번호 | 타입 | 세대별 계약면적(㎡) | | | | | 공급세대수 | 최초 입주개시일 |
|---|---|---|---|---|---|---|---|---|
| | | 세대별 공급면적 | |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등) | 계약면적 | 일반공급 |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공급면적 | | | | |
| 2024850024 | 65A | 65.9024 | 20.1082 | 86.0106 | 39.8257 | 125.8363 | 50 | 2024년 06월 |
| | 74A | 74.9331 | 22.4635 | 97.3966 | 45.2830 | 142.6796 | 38 | |
| | 74B | 74.9719 | 22.6396 | 97.6115 | 45.3065 | 142.9180 | 27 | |
| | 74C | 74.9808 | 23.4809 | 98.4617 | 45.3119 | 143.7736 | 5 | |
| 합계 | | | | | | | 120 | |

▌청약에 적용되는 주택 타입 명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표기된 타입 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 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 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영유아 가정 어린이집 운영 목적에 한해 사업주체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해 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이며, 임차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체는 임대차계약 신고 및 변경 법적사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본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타입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기타 안내 및 홍보관 및 공급안내문 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타입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Ⅱ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본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본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 일반공급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세대, 천원)

| 타입 | 공급 세대수 | 층 | 표준형 | | | | 선택형1 | | | | 선택형2 | | | |
|---|---|---|---|---|---|---|---|---|---|---|---|---|---|---|
| | | | 보증금 | | | 월임대료 | 보증금 | | | 월 임대료 | 보증금 | | | 월임대료 |
| | | | 총액 | 계약금 | 잔금 | | 총액 | 계약금 | 잔금 | | 총액 | 계약금 | 잔금 | |
| 65A | 16 | 1~5층 | 140,000 | 14,000 | 126,000 | 45 | 90,000 | 9,000 | 81,000 | 217 | 30,000 | 3,000 | 27,000 | 423 |
| | 34 | 6~최상층 | 140,000 | 14,000 | 126,000 | 47 | 90,000 | 9,000 | 81,000 | 228 | 30,000 | 3,000 | 27,000 | 445 |
| 74A | 10 | 1~5층 | 140,000 | 14,000 | 126,000 | 66 | 90,000 | 9,000 | 81,000 | 238 | 30,000 | 3,000 | 27,000 | 445 |
| | 28 | 6~최상층 | 140,000 | 14,000 | 126,000 | 69 | 90,000 | 9,000 | 81,000 | 250 | 30,000 | 3,000 | 27,000 | 468 |
| 74B | 9 | 1~5층 | 140,000 | 14,000 | 126,000 | 66 | 90,000 | 9,000 | 81,000 | 238 | 30,000 | 3,000 | 27,000 | 445 |
| | 18 | 6~최상층 | 140,000 | 14,000 | 126,000 | 69 | 90,000 | 9,000 | 81,000 | 250 | 30,000 | 3,000 | 27,000 | 468 |
| 74C | 3 | 1~5층 | 140,000 | 14,000 | 126,000 | 66 | 90,000 | 9,000 | 81,000 | 238 | 30,000 | 3,000 | 27,000 | 445 |
| | 2 | 6~최상층 | 140,000 | 14,000 | 126,000 | 69 | 90,000 | 9,000 | 81,000 | 250 | 30,000 | 3,000 | 27,000 | 468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 됩니다.)

▌단, 2년 단위 계약갱신에 따라 2년분의 누적상승율(인상분)은 계약 갱신 시에 일괄반영하며, 계약기간동안에는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임대조건은 타입별, 층별 차등이 있으므로 청약전 임대조건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에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 임대조건 선택 안내

▌최초 계약 시 표준형, 선택형1, 선택형2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 전 선택한 임대조건(표준형, 선택형1, 선택형2)은 추후 임대차계약 갱신 전까지 변경이 불가하고, 갱신 시점에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서면통지로 변경계약조건을 임차인에게 안내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여부에 대한 의사를 임대인에게 서면통지 하도록 합니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이 안내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 잔금은 선택형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Ⅲ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공통)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4.12.27.(금)] 현재 청약통장 가입여부 등에 관계없이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

▌청약통장 가입여부,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누구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일반공급 신청자격

▌일반공급 모집안내

| 모집분야 | 내용 |
|---|---|
| 일반공급 |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4.12.27.(금)]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br>• 본 주택은 세대 당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br>•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br>•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br>※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청약신청자의 나이, 국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판단 기준입니다.<br>•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등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함. 단,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미 충족 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선정 방법

- 이 주택은 청약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예비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시 타입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타입별 공급세대의 900%까지 예비임차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예비임차인이 전부 소진되어 예비임차인이 없을 경우, 일반공급은 입주개시일 이후 시점으로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금 및 환불처리

▌청약신청금(일반공급)

| 구분 | 청약신청금 | 신청금 납부방법 |
|---|---|---|
| 전 타입 | 10만원 | • 주택청약 참가은행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 | | |
|---|---|---|
| | |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청약 서비스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에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br>※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은 일반적인 APT 주택청약과는 별개의 제도로 청약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청약금을 예치(출금)하여 청약합니다. |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 환불대상 : 인터넷 청약 신청자 전원(당첨자 포함)
  - 청약신청금에 대한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 구분 | 환불방법 |
|---|---|
| 인터넷 청약자 | • 당첨자 발표 익일 은행영업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br>(※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청약 시 환불 신청 계좌가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인터넷청약 서비스 안내(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
| 이용대상 |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가입(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br>※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10만원) 이상이어야 함. |
| 이용방법 | • [PC 청약 시]<br>1. 접속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접속 → 공공지원민간임대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하기<br>2.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 (타입)선택 → 유의사항 확인 → 공급유형(일반공급) 선택 → 청약자격 확인 → 선정기준 입력/확인 → 연락처 등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br>• [스마트폰 청약 시]<br>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접속 후 PC청약방법 참조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 청약은 PC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또는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발급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중복당첨 시 당첨을 취소합니다.

▌본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청약홈 인터넷 청약 접수 마감 시간 17시 30분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시 30분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이 2일 이상 진행되더라도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당일 17시 30분 이전에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신청 전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신청금(10만원 이상)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 홍보관 방문 청약 안내사항**

▌청약 신청자 중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의 경우, 홍보관 방문 시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청약접수를 도와드릴 예정이고, 아래 일정 및 장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및 장소**

| 구분 | 청약신청 | 신청장소 |
|---|---|---|
|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 | 2025.01.02.(목) [10:00 ~ 16:00]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1218(단지내 상가 105호) |

**▣ 구비사항**

| 구분 | 구비사항 | |
|---|---|---|
| 본인신청 시<br>(배우자포함) | • 일반공급 홍보관 방문 청약 시 청약신청금 필요(주택청약 참가은행에 통장개설 및 청약신청금 예치),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발급 후 인증서를 지참하여 홍보관 방문<br>※ 단,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br>※ 홍보관에서는 현금수납 불가하므로 필히 주택청약 참가은행 입출금 통장에 청약신청금(10만원)이 예치돼 있어야 하며, 인증서를 필히 발급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br>•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배우자 대리 신청 시는 배우자의 신분증)<br>※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확인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표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
| 제3자 대리 신청 시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
|---|---|---|
| 추가사항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br>- 단, 재외동포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가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1통<br>•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4.12.27.(금)]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타입 착오기재, 모집공고상 기준과 상이한 다수 청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홍보관 방문 청약 신청 시 주택청약 참가은행에 청약신청금 예치 및 공동인증서(또는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발급 후 인증서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하며, 홍보관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청약홈 신청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제4항 **)**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사항**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사업자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 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 [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 하여야 한다.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9.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Ⅳ 공급일정

**▣ 청약 및 계약일정**

| 구 분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당첨자 발표 | 계약일자 |
|---|---|---|---|---|
| 일반공급 | 2025.01.02.(목)<br>09:00 ~ 17:30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접수<br>(www.applyhome.co.kr)<br>* 정보취약계층은 홍보관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2025.01.07.(화) 16:00 이후<br>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2025.01.14.(화) ~ 2025.01.15.(수)<br>10:00 ~ 16:00 |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착오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 통지 및 유선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Ⅴ 계약체결

### ▣ 계약일정 및 장소

| 구 분 | 일 정 | 계약체결 장소 |
|---|---|---|
| 구비서류 제출 | 2025.01.09.(목) ~ 2025.01.10.(금) / 10:00 ~ 16:00 | 홍보관<br>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1218(단지내 상가 108호) |
| 당첨자 계약체결 | 2025.01.14.(화) ~ 2025.01.15.(수) / 10:00 ~ 16:00 | |

###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 | | |
| 공통서류<br>(일반공급) | ○ | |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본인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사전 제출서류 계약 시 대체) |
| | ○ | |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본인 | • 주택 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 ○ | | 3.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b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신청 불가 |
| | ○ | | 4.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
| | ○ | | 5.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 | | 6.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 | ○ |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 | 8.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배우자 |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 | 9. 추가 개별통지 서류 | 본인 |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 ○ | | 10, 무주택서약서 | 본인 | • 당사 홍보관 비치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 |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

| | | | | | |
|---|---|---|---|---|---|
| 추가사항<br>(배우자 포함) | ○ | | 2. 위임장 | - | • 주택홍보관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 | ○ | |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4.12.27.(금)]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택홍보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 · 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

| 구 분 | 금융기관명 | 납부 계좌 | 예금주 | 비고 |
|---|---|---|---|---|
| 임대보증금 계약금, 잔금 | 우리은행 | 1005-404-615789 | ㈜엘티대한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상기 계좌는 임대보증금 관리계좌로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임대보증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807-1906)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홍보관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자 지위가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 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월 임대료 납부

- 월 임대료 납부계좌는 입주 전 별도로 고지할 계획입니다.

## Ⅵ 유의사항

**▣ 입주지정기간 : 2025.01.17.(금) ~ 2025.03.18.(화)**

-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은 정당계약일 이후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대·내외 다양한 변수로 인해 예정된 입주 시기 등 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명확히 인지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

- 코워킹스페이스,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 맘스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작은도서관, 다이닝키친, 다목적홀, 경로당, 공유주방, 세대창고 등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의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 대상액을 정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임대주택을 감정평가한 금액의 60% 이하인 경우 보증대상액이 없으므로 보증가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보증서 번호 | 보증 금액 | 보증 기간 |
|---|---|---|
| 제01282024-704-0020000호 | 10,761,200,000원 | 보증서 발급일부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br>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위해 보증서가 발급된 세대의 보증기간 시작일은 민간임대주택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부터로 함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 보증사고 시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약관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보증회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샷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공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공사 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일”이란 보증회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 발코니 확장 및 유의사항**

- 본 임대주택은 사용승인 이후 분양하는 후분양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로 전 타임 및 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고, 기본형 선택이 불가합니다.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공급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점 명확히 인지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공동주택은 침실1 전면부 및 다용도실을 제외한 전체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하여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점 명확히 인지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타입별 평면을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명확히 인지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 사항은 홍보자료 및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내부 형상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 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계약은 (주)엘티대한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체결하게 됩니다.
- 사업주체인 (주)엘티대한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이 주택을 리츠의 자산보관기관인 엔에이치투자증권(주)에 수탁하였습니다.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부정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제101조 및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5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청약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홍보관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elyes.co.kr/main/main.do)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상담, 홍보관 방문고객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약조건 및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금 중 200만원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계약금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계약금 일체가 위약금으로 공제됩니다.), 납부한 보증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퇴거 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500만원)을 유보금으로 우선공제 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차인과실 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1개월 내에 반환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임차인 모집공고 내용과 주택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인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임대의무기간 10년 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기간 연장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임대의무기간 종료시점 사업주체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 후 임차인이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 본 주택의 단지 외부에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옹벽설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휴게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홍보관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경우 외부인 이용가능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어 외부인에 대한 임시주차가 일부 허용되며 이점 명확히 인지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정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대·내외 다양한 변수로 인해 예정된 입주 시기 등 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명확히 인지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사업자,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역의 타 시공사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지정기간 이후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일부를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처벌받게 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이 주택 청약신청 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해당 주소는 필수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계약시 입주자에게 별도의 융자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지는 매도청구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5개월, 하자 보수 업무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27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설계·시공 상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일반사항 |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 방식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등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br>• 세대 공용면적(계단실,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등)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되었음.<br>• 세대의 침실별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침실별 벽체두께 및 기둥여부 등에 따라 실제 사용면적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br>• 실 대지 측량 결과, 공부정리 절차 및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등에 따라 부지경계 및 대지경계선이 변경될 수 있음. 이로인하여 조경라인(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각종 인쇄물, CG 이미지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임대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br>• 대지경계 및 면적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br>•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br>• 타입별로 서비스 면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br>• 세대당 공급면적은 공부정리절차,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모집공고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키로 함.(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함.)<br>• 세대당 계약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또는 실제시공시 시공여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br>• 당해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br>•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서 등 직접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br>•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소음, 진동,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br>•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br>• 홈페이지, 팜플렛,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단종),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br>• 사이버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홈통, 콘센트, 환기 디퓨져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br>•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주민카페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br>•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한 임차인모집공고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양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또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br>•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br>•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br>• 본 주택의 임대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임대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 | |
|---|---|---|
| | | • 타 지역,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 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후 계약하시기 바람.<br>• 단지 외부도로의 계획변경 등은 지구단위계획 사업주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당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br>•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br>• 양산 사송지구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br>• 단지 인근 도로, 공원, 상 · 하수도, 전기 · 난방시설, 기타처리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 · 취소 ·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br>• 양산 사송지구 개발사업 준공완료 시까지 공사소음, 분진 및 비산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 및 도로, 생활편의시설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br>• 당해 구역에 개발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개조경 등 개설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br>• 단지 인근의 근린상업용지, 공동주택용지, 공원 및 녹지, 도로 등에서 발생 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br>•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계약 전에 홍보관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br>• 본 지구외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및 주변상황은 해당기관 및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개통일정,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br>• 단지 인근의 유해시설(철탑, 묘지, 축사 등) 위치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br>• 각종 광고 · 홍보물(사이버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 · 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br>• 본 아파트는 기반시설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대지의 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 |
| 단지 | 공통<br>사항 | •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br>•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조경시설물 및 미술장식품, 주차장램프 인접세대)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택홍보관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를 미리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br>•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br>•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통신중계장치,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br>• 승인관청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디자인 자문을 받을 수 있음으로 주택홍보관에 표현된 CG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br>• 출입구는 단지 동측 801동 부근에 주출입구와 단지 남동측 803동과 802동·811동 사이 부출입구가 위치하며 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br>• 단지 북동측에는 23M도로, 남동측에는 8M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해당 도로로 인해 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빛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br>• 단지 남동측에 계획된 수변공원 및 하천과 단지 북서측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단지 (사송지구 A-4BL) 관련 사항은 당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br>• 지상주차장 인근 세대의 경우 차량 통행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이 발생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br>• 단지 동측에 연결도로가 공사중으로 향후 일부 구간은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고, 도로완공이후 소음 등에 노출될 수 있음. |

| | | |
|---|---|---|
| | | • 단지 북측에 있는 명곡지 개발계획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므로 단지와 직접적인 연결로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없음.<br>•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br>• 단지 내 자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자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br>•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br>•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및 통로 등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일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br>• 일부 저층세대는 조경계획으로 인한 일조량, 조망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br>•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일부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음.<br>•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점검 및 안전성 등의 이유로 설계변경하여 설치될 수 있음.<br>• 단지 외곽 경계에 별도로 휀스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조경계획이나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전면, 보행자 출입구간에는 별도의 외부인 차단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음<br>•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br>• 수경시설은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가 연결될 예정이며,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br>• 수경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br>• 단지 내 수경시설에는 수질 정화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며, 물놀이 시설이 아닌 관상용 시설이므로 별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음.<br>• 단지 내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가벽 등 조경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식재기반조성 및 미관개선을 위해 분양홍보물과 상이한 구조물(플랜터, 마운딩등)이 계획될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저층세대에 일조, 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음.<br>• 단지 내 소방안전매트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가 제한되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br>•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조망,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br>• 각종 필로티 내부 혹은 주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인접하게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 조망권 및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br>•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이로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br>• 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9개소(근린생활시설용 1개소 포함)가 설치될 예정이며 근린생활시설용은 근린생활시설 동측에 계획되어 있음. 공동주택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외부 조경공간의 배치 개선시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고 각 동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는 각각 상이함<br>•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br>• 단지 내부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br>• 단지 내 생활폐기물처리장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냄새, 소음, 진동 등에 노출될 수 있으니 인지하시기 바람.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br>• 각 동별 계단실 창호는 고정창으로 설치되나, 5개층마다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임.<br>• 지하층 환기 및 채광을 위하여 채광창 및 D.A가 지상에 노출되며, 저층 세대에서 시야 간섭, 소음 및 분진 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위치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주택홍보관에서 확인바람.<br>•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및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는 인근 세대는 소음, 조망 및 분진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br>• 단지내에는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제연휀룸 배기시설,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실외기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 | |
|---|---|---|
| | |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설치되는 무동력 흡출기가 외벽방향으로 설치되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br>•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 결과에 따라 802동 옥상층, 803동 옥상층, 806동 옥상층, 808동 옥상층에 옥외안테나 / 802동 옥상층, 803동 옥상층, 806동 옥상층, 808동 옥상층, 지하3층 804동 통신실, 지하4층 802동 제연휀룸, 지하7층 801동 동통신실에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기관 사업자 선정 후 위치는 이동될 수 있음)<br>• 각 동별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 반사 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 등이 일부 세대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br>•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은 OS 정책 및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종에 따라서는 기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br>•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 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br>• 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 제어 및 정보조회가 가능한 '롯데스마트홈' 서비스가 제공됨.<br>• 스마트홈 IoT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될 경우, 입주 지원 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음성인식 스피커는 별도 구매 품목이며, 스마트홈 IoT 연동 가전제품은 서비스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함.<br>•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단지내 옥상, 지상,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중계장치,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계약 전 도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이동통신 중계장치의 경우 입주 이후 관리사무소, 입대위 결정을 통해 설치함.)<br>•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세대 내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될 수 있음.<br>• 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br>• 단위세대, 부대복리시설 등에 설치되는 전열교환기 필터 교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br>•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br>• 근린생활시설 지붕에는 해당 시설의 실외기 등이 다수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저층 세대의 경우 계약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br>•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동의 필로티 옆, 상층부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br>• 단지 출입구 문주는 동측 주출입구(1개소)에 설치되며 문주 설치로 인한 일조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br>• 단지내 지하PIT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 집수정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br>• 단지내 지하에는 세대창고가 세대당 1개소가 아닌 일부세대만 사용할 수 있는 수량으로 지하2층 806동, 지하4층 807동 및 지하7층 808동의 주동출입구 부근에 설치됨. 세대창고는 추후 별도로 입주자관리규약에 따라 공급할 예정임으로 사용시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음.<br>• 세대창고에 보관하는 물품이 향후 결로, 부식, 곰팡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하지 않으니, 고려하시어 보관물품을 선정하시기 바람.<br>• 작은도서관, 810동 및 811동 상부 옥상층에는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옥상녹화가 반영되고, 실내 주민운동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상부 옥상층에는 경관 개선을 위한 인조잔디가 반영되어 이용 불가한 공간으로 유지보수 등의 목적으로 관리자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당공간과 인접한 세대에서는 해당구간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여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br>• 입주자 사전방문일 등 당사가 지정한 날짜 외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br>•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운영방식 및 관리비부과 등은 입주자가 결정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음. |
| | 주차장 |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 인허가시 협의부서 의견에 따라 설계 변경될 수 있음.<br>• 단지 내 단차로 인해 대부분의 주동은 주동코어에서 지하주차장 2개층 직출입이나, 801, 809 동은 주동코어에서 지하주차장 직출입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br>•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 | | |
|---|---|---|
| | |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함.<br>•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br>•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br>• 지하주차장 지하출입층 진출입구 유효높이는 지하출입층 2.7m로 설계되었으며, 내부통로 유효높이 2.3m 이외구간(차량주차구간 등)은 높이가 다름.<br>•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br>• 지하주차장 출입램프 구조물로 인한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br>• 지하6층 주차장에서 801동 하부 어린이집 홀 진입은 대지여건상 경사형태의 긴 복도구간으로 연결되어 있음으로 이에 유의하시기바람.<br>• 지하6층 주차장에서 808동 E/V홀 진입은 대지여건상 긴 복도구간으로 연결되어 있음으로 이에 유의하시기바람.<br>• 지하7층 주차장에서 809동 E/V홀 진입은 대지여건상 경사형태의 긴 복도구간으로 연결되어 있음으로 이에 유의하시기바람.<br>• 지하주차장에서 각 동 E/V홀 진입을 위한 복도구간의 천정마감은 제연구간이 아니며 노출형태로 시공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바람 |
| | 주민공동시설 |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시설에 입주민을 위한 임대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br>•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시설은 임대 관리 업체를 통한 관리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전환 후 입주자에게 인계할 예정임.<br>• 부대복리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br>•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등), 작은도서관, 공유주방 등이며 내부시설물(운동기구 등)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 될 수 있음.<br>• 일부동의 1층, 지상층, 지하층, 최상층에는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br>•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br>• 경로당 화장실 바닥에는 하부 PIT 점검구가 설치되어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br>•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br>•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br>•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내 공용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음. |
| | 근린생활시설 | • 근린생활시설은 사업주체에서 운영·관리할 예정으로 일반분양 대상이 아님.<br>•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와 경계가 분리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br>•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출입에 따른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br>•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 보관함은 해당시설 입점자(입실자)가 관리함.<br>• 근린생활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br>•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구간은 옥상에 배치될 예정이며, 실외기 소음등으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br>•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아파트와 일부 동선이 중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br>•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실외기, 환기구가 설치되어 저층부 세대에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br>•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br>• 소방법상 소화전 1개소 설치하여야하며, 소화전 앞 적재불가 |
| | 공용홀 | • PD, EPS, TPS실 등 내측 조적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이 시공되지 않음.<br>• PD, EPS, TPS실 등은 철판으로 시공되며 철판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이 시공되지 않음.(단, 지하 및 1층에는 공용홀 마감계획에 따라 조적으로 시공될 수 있음.) |
| | 동별 | • 801동 5호라인 1층이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음.<br>• 801동 3호라인 정면과 4호라인 측면의 지반층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br>• 801동 1,2호라인 지하2층에 맘스키즈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 | | |
|---|---|---|
| | | • 801동 주동 북측에 유아놀이터 및 조경수경시설, 북서측에 어린이놀이터 및 휴게공간 및 주민운동시설, 서측에 옥상조경이 계획되어있어,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여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br>• 801동 주동 남동측 도로, 소방차 정차구역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br>• 801동 주동 남서측, 4호라인 측면에 생활폐기물 저장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br>• 801동 주동 남동측에 있는 수변공원 이용객으로 인해 냄새, 소음, 진동 등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br>• 801동의 3,4호 라인의 지반층 주동출입구의 경우 측면 위치에 5,6호 주동출입구가 필로티로 계획되어있음. 이에 따라 필로티 장식구조물이 3,4호 라인 주동출입구 진입동선에 일부간섭되어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br>• 801동의 저층부 세대의 경우 5호라인 1층에 필로티가 설치됨에 따라 보강골조 및 장식물이 계획되어 시야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특히 205호는 우천시 창호를 개폐할 경우 빗물이 유입될 수 있어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br>• 802동 5호라인 1층이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음.<br>• 802동 1,2호라인 배면의 지반층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br>• 802동 주동 북서측에 조경수경시설 및 휴게공간, 북측에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있어,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여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br>• 802동 주동 남동측 도로, 소방차 정차구역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br>• 802동 주동 1호라인 동측면에 생활폐기물 저장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br>• 802동 주동 북동측과 서측에 있는 외부계단 이용객으로 인해 냄새, 소음, 진동 등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br>• 802동의 3,4호 라인의 지반층 주동출입구의 경우 측면 위치에 5,6호 주동출입구가 필로티로 계획되어있음. 이에 따라 필로티 장식구조물이 3,4호 라인 주동출입구 진입동선에 일부간섭되어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br>• 802동의 저층부 세대의 경우 5호라인 1층에 필로티가 설치됨에 따라 보강골조 및 장식물이 계획되어 시야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특히 205호는 우천시 창호를 개폐할 경우 빗물이 유입될 수 있어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br>• 801동, 802동은 주동하부에 테라스 세대타입의 810동 및 811동이 계획되어있고, 특히 테라스 공간은 외부에 노출된 구조로 생활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br>• 803동 4호라인 1층이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음.<br>• 803동 1,4,5호라인 배면의 지반층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br>• 803동 주동 남측 도로, 소방차 정차구역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br>• 803동 주동 북측, 6호라인 배면에 생활폐기물 저장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br>• 803동 주동 남동측에 있는 수변공원 이용객으로 인해 냄새, 소음, 진동 등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br>• 803동 주동 남서측에 주민운동시설, 북측 휴게공간이 계획되어있어,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여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br>• 804동 2,3호라인 정면과 6호라인 측면의 지반층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br>• 804동 지하 PIT층에 공유주방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br>• 804동 주동 북측에 휴게공간(글램핑장 등),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서측에 휴게공간(펫파크 등), 남동측에 주민운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여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br>• 804동 주동 남측 도로, 소방차 정차구역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br>• 804동 주동 북측에 생활폐기물 저장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br>• 804동 주동 남측에 있는 옹벽으로 인해 시야간섭 및 조망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br>• 805동 1,2호라인 정면의 지반층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 | | |
|---|---|---|
| | | • 805동 주동 동측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남측에 휴게공간(펫파크)이 계획되어있어,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여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br>• 805동 주동 북동측에 생활폐기물 저장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br>• 805동 주동 남서측에 있는 옹벽으로 인해 시야간섭 및 조망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br>• 806동 3호라인 1층이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음.<br>• 806동 1호라인 측면의 지반층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br>• 806동 1,2호라인 데크층에 경로당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br>• 806동 주동 북측에 휴게공간, 동측에 텃밭, 남동측에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이 계획되어있어,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여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br>• 806동 주동 서측, 6호라인 정측면에 생활폐기물 저장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br>• 806동 주동 북측에 있는 옹벽으로 인해 시야간섭 및 조망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br>• 807동 3호라인 1층이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음.<br>• 807동 1호라인 측면과 2호라인 정면의 지반층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br>• 807동 1,2호라인 전면 데크층에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br>• 807동 주동 북측에 휴게공간, 동남측에 수경시설 및 휴게공간, 남서측에 텃밭, 주민운동시설, 동측에 어린이놀이터 및 옥상조경이 계획되어있어,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여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br>• 807동 주동 북측, 5호라인 생활폐기물 저장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br>• 807동 주동 북측에 있는 옹벽으로 인해 시야간섭 및 조망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br>• 808동 3호라인 1층이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음.<br>• 808동 1호라인 정면의 지반층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br>• 808동 1,2호라인 데크층에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br>• 808동 주동 북측에 휴게공간, 동남측에 어린이놀이터 및 휴게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남측의 옥상조경이 계획되어있어,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여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br>• 808동 주동 서측, 북측에 생활폐기물 저장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br>• 808동 주동 남측과 북측에 있는 옹벽으로 인해 시야간섭 및 조망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br>• 809동 2호라인 1층이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음.<br>• 809동 서측에 생활폐기물 저장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br>• 809동 주동 남측에 휴게공간, 주민운동시설, 남동측에 수경시설이 계획되어있어,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여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br>• 808동 및 809동의 경우, 1개의 생활폐기물보관소가 대형사이즈로 계획되어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있음<br>• 810,811동 일부세대에서는 선큰외벽 및 외부옹벽이 설치되며 이로인해 시야간섭 및 조망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br>• 811동 주택형 84T 테라스형 구조로 데크층, 1층 호(라인)이 다른 층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br>• 811동 주동 동측, 1호라인 측면에 생활폐기물 저장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br>• 811동 주택형 84T 테라스형 구조로 데크층, 1층 호(라인)이 다른 층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br>• 810동, 811동 테라스형 구조이며 저층세대로만 계획되어, 다른 주동과 상이하게 단위세대 내부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음. |

| | | |
|---|---|---|
| | | • 811동의 2,3호라인 세대는 테라스의 세대 경계 구분이 난간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간섭, 조망간섭, 소음, 냄새,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 어린이집 | | •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 및 운영될 예정임.(단, 관할 지자체의 의견 및 지역내 어린이집 공급 여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으로 입주민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br>•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양산시와 체결할 예정임.(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br>•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양산시에서 신청하는 위탁운영자(원장)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동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의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교육시설 | | • 입주자의 학교배치는 아래와 같으며 향후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br>1. 초등학생의 경우 2024년 9월 1일 사송초등학교 개교 전 입주자는 동면초등학교로 배치될 예정이며, 2024년 9월 1일 사송초등학교 개교 후 입주자는 사송초등학교로 배치될 예정이고, 향후 (가칭)사송초중통합학교의 개교에 따라 초등학생의 학교배치가 변경될 수 있다.<br>2. 중학생은 사송중학구에 배치될 예정이며,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에 따라 배치가능 학교군 및 중학교는 변경될 수 있다.<br>3. 고등학생은 관내 배치될 예정이다. |
| 단위<br>세대 | 공통사항 |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br>•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br>•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승인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아파트 외벽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br>• 세대내의 보이지 않는 가구배면(천정, 벽, 바닥 등) 마감은 시공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의 시공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br>• 욕실 가구 혹은 거울 뒷면 등 보이지 않는 곳은 실제 시공 시 재생타일을 이용하여 마감하거나 혹은 마감이 되지 않을 수 있음.<br>• 주택형의 기본 천정고는 2.3m 시공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br>•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br>• 현관 방화문, 가구, 창호(향후 풍압테스트에 따라 조정)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br>• 실외기와 하향식 피난구는 동일한 공간에 설치되며, 여름철 에어컨 작동 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루버창 개방 후 사용하기 바람.<br>• 지하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음.<br>• 단지 내 일부세대는 주민공동시설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생활소음 발생,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br>•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br>• 부대시설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br>•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br>• 일부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br>•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br>•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 안방 각 1개소 매립 설치됨. |

| | | |
|---|---|---|
| | |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음.<br>• 욕실 및 보조주방 문은 방수 성능을 위해 목재 도어가 아닌 ABS도어로 시공 됨.<br>• 석재류 시공부위는 가공으로 인해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할 수 있음.<br>•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br>• 주방 렌지후드내에는 자동식 소화기 설치되어 화재 시 소화액이 분사될 수 있음.<br>•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구,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 불가할 수 있음<br>•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br>• 각 세대의 일조량 및 조망권은 당해 단지 여건 및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계약 전 사전 확인하기 바람.<br>•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 차이는 당사가 임의 조정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br>•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음.<br>•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도면과 다소 다를 수 있음.<br>•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으로 공급될 예정임.<br>• 세대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홍보관 및 분양 안내책자 등의 기준으로 시공 예정이나, 층 및 향에 따라 발생하는 바람의 영향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에 구현된 형태와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br>•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br>• 사이버모델하우스,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홈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 디퓨저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br>• 당사에 적용된 공기질관리통합시스템, 미세먼지 센터 알림시스템(부대시설) 이용 시 통화료 이외의 별도의 이용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세먼지적용 아이템은 기술적인 문제나 제조사의 사정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br>•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br>•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에서의 소음이 외부로 전달될 수 있음. |
| | 창호 | • 외부창호 프레임의 색상은 외측은 회색, 내측은 시트지(주택형별 상이)가 시공될 예정임(실제 시공 시 창호 위치에 따라 외부창호 프레임 색상이 변경됨을 인지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br>• 실외기실 루버창은 외부도장과 연계해서 일부세대에서 색상이 다를 수 있음. |
| | 발코니확장 | • 본 아파트는 발코니확장 및 외부샷시가 설치가 완료되어 있음.<br>•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시공사가 공사하여 제공함.<br>• 사이버모델하우스는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구현함.<br>• 발코니 확장부위 외측창은 22mm일면로이복층유리 이중창으로 설치됨. 안방의 비확장부위인 내측 분합문은 16mm로이복층유리단창, 외측창은 22mm로이복층유리 단창으로 설치됨. 주방발코니 외측창은 22mm일면로이복층유리 이중창 설치예정임(설치부위에 따라 샷시의 설치기준이 상이하오니 확인 후 및 계약 하시기 바람)<br>• 발코니 샷시는 복층유리 적용을 기본사양으로 하며,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실 시공 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br>• 발코니 확장부위는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br>•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및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br>•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함.<br>•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소방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br>•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 | |
|---|---|---|
| | |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br>• 실외기/하향식 피난구의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에는 소방피난이동공간으로 계획된 용도 외의 사용이 불가하며, 피난동선의 방해가 되는 적재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함.<br>• 실외기/하향식 피난구의 하향식 피난구는 바닥에 햇치커버와 피난용 사다리가 일치되어 설치 됨. |
| 분양홍보관련 | |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사이버모델하우스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br>•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사이버모델하우스와 일부 상이한 생상과 무늬가 설치 될 수 있음.<br>• 사이버모델하우스 천정고는 2.3m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br>• 사이버모델하우스 내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 등은 당사에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br>• 사이버모델하우스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br>•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br>•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및 주택홍보관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br>•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주민 카페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br>• 광고·홍보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br>• 사이버모델하우스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 계약관련 | | •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은 불가함.<br>•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일체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br>•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임대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br>•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분양대행업체, 사전점검관련업체, 주택임대관리업체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 ▣ 친환경 주택 성능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 구분 | | 적용여부 |
|---|---|---|
| 건축부문 설계기준<br>(「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br>제7조 제2항 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 기계부문 설계기준<br>(「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br>(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 | | |
|---|---|---|
| 제7조 제2항 제2호)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 | (지역난방 적용) | 적용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 · 급수펌프(마목) | 적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 전기부문 설계기준<br>(「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br>제7조 제2항 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 주택성능 등급**

• 「주택법」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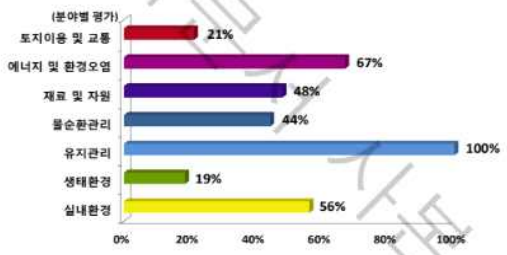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일반(그린4)등급)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1+등급) |
|---|---|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건축물 개요 | | 인증 개요 | |
|---|---|---|---|
| 건축물명 | : 양산사송 B-8BL 민간임대주택사업 | 인증번호 | : G-SEED-P-2021-0375-6 |
| 건 축 주 | : 롯데건설㈜ | 인증기관 | :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
| 준 공 일 | : 2023.07.21. | 유효기간 | : 2021.04.22. ~ 사용검사일까지 |
| 주 소 |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양산사송지구 B-8BL | | |
| 층 수 | : 지하7층, 지상19층 | | |
| 연 면 적 | : 136,158.38㎡ | | |
| 건축물 용도 | : 공동주택 | | |
| 설 계 자 | :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 | |

| 인증 등급 | |
|---|---|
| 인증등급 | : 일반(그린4등급) |
| 인증기준 | : 녹색건축 인증 기준(2016-5) |
| | [별표1] 신축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64호 |
| |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 ☆ ☆

2021년 04월 22일

(사)한 국 그 린 빌 딩 협 의 회 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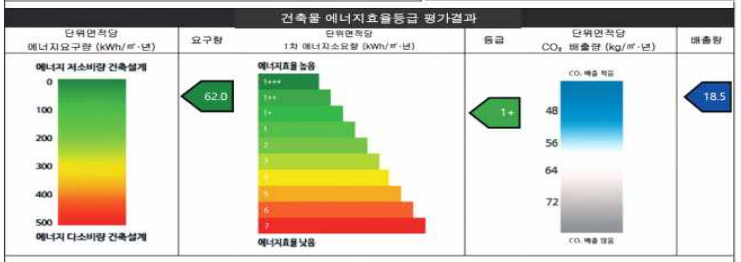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0>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개요 | | 인증 개요 | |
|---|---|---|---|
| 건축물명 | : 양산사송 B-8BL 민간임대주택사업 | 인 증 번 호 | : 21-주-에-1+-0188 |
| 준공연도 | : 20230721 | 평 가 자 | : 어현지 |
| 주 소 |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양산사송지구 B-8BL | 인 증 기 관 | : 한국부동산원 |
| 층 수 | : 지하7층 / 지상19층 | 운 영 기 관 | : 한국에너지공단 |
| 연면적 | : 136158.3834(㎡) | 유 효 기 간 |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
| 건축물의 주된 용도 | : 공동주택 | | |
| 설 계 자 |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 | |

| 인증 등급 | |
|---|---|
| 인 증 등 급 | : 1+등급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 구분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
|---|---|---|---|---|
| 냉방 | 0.0 | 0.0 | 0.0 | 0.0 |
| 난방 | 20.3 | 30.1 | 27.7 | 5.8 |
| 급탕 | 30.7 | 36.6 | 27.5 | 6.1 |
| 조명 | 11.0 | 10.5 | 29.0 | 4.9 |
| 환기 | - | 3.6 | 9.8 | 1.7 |
| 합계 | 62.0 | 80.8 | 94.0 | 18.5 |

| | |
|---|---|
|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 V ]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 년 03 월 31 일

한국부동산원장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 구분 | 감리회사명 | 감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비고 |
|---|---|---|---|
| 건축감리 | (주)단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 2,204,700,300원 | |
| 소방감리 | (주)선한이엔지 | 275,000,000원 | |
| 정보통신감리 | (주)선한이엔지 | 110,000,000원 |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사업주체 | 시공회사 | 자산관리회사 | 자산보관회사 |
|---|---|---|---|
| (주)엘티대한제8호<br>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br>(110111-7887370) | 롯데건설(주)<br>(110111-0014764) | (주)대한토지신탁<br>(110111-1492513) | 엔에이치투자증권(주)<br>(110111-0098130) |

※ 시행사 및 시공사의 법인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에게 고지하고 별도 공고는 하지 않음.

▣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s://www.elyes.co.kr/main/main.do
▣ **주택홍보관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1218(단지내 상가 108호)
▣ **임대 및 계약관련 문의 :** ☎ 055-372-4999

※ 본 임차인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홍보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 및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